

사회적 집단의 이름과 공점의 문제

외연주의는 왜 의미론적 부담을 지는가?

우인진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철학과

철학과인문교육연구소 제25회 논문 발표회

2026년 8월 7일 (금) 11:00-11:50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4층 31406호



차례

- 1 공점의 문제
- 2 표적: 환원적 물질주의
- 3 의미론적 전환 전략
- 4 화용론적 해소 전략과 그 실패
- 5 결론

차례

- 1 공점의 문제
- 2 표적: 환원적 물질주의
- 3 의미론적 전환 전략
- 4 화용론적 해소 전략과 그 실패
- 5 결론

하나의 퍼즐

미국 대법원과 사법 윤리 특별 위원회(이하 사법위원회)가 **정확히 같은 구성원**을 갖는다고 하자. (Uzquiano 2004, pp. 141–142)

- (1) 대법원은 회기중이다.
- (2) 사법위원회는 회기중이다.
- (3) 대법원은 헌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진다.
- (4) 사법위원회는 헌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진다.
- (5) 대법원은 상원에 의해 조직되었다.
- (6) 사법위원회는 상원에 의해 조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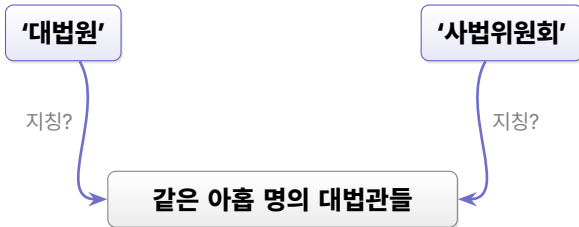
그런데

미국의 법률과 상식에 따르면 (3)·(6)은 참이고 (4)·(5)는 거짓이다. 두 이름이 같은 대상을 공지칭한다면 지칭의 대체 가능성 원리에 따라 각 쌍은 진릿값이 같아야 한다.

퍼즐의 구조

- (3) 헌법 해석 권한 — 참
(5) 상원에 의해 조직 — 거짓

- (4) 헌법 해석 권한 — 거짓
(6) 상원에 의해 조직 — 참



두 이름이 같은 대상을 공지칭한다면
각 쌍의 진릿값은 갈릴 수 없다

공점 논증

대법원과 사법위원회의 퍼즐

월요일, 대법관들이 평소대로 직무를 수행한다. 화요일, 상원이 모든 대법관을 사법위원회로 임명한다. 그 사이 어느 집단의 구성원도 변한 적이 없다.

(퍼즐 1) 화요일에 대법원은 헌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진다.

(퍼즐 2) 화요일에 사법위원회는 그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퍼즐 3) 어떤 시점에 한쪽이 갖는 속성을 다른 쪽이 갖지 않는다면, 둘은 동일하지 않다.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 이른바 라이프니츠의 법칙]

(퍼즐 결론) 대법원은 사법위원회와 동일하지 않다.

전제 둘은 미국의 법률에 의해 참이고, 셋째 전제는 라이프니츠의 법칙이 보증한다.

퍼즐 형식의 선택

문헌에서 더 흔한 것은 **존재 시점**의 차이에 호소하는 형식이다.

(존재 1) 사법위원회는 월요일에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 2) 대법원은 월요일에 존재했다.

(결론) 사법위원회는 대법원과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이 형식은 표준적 대응 하나를 그대로 통과시킨다

시간적 부분 이론 (Sider 2001)을 받아들이면 대법원에 대응하는 사차원적 대상은 월요일까지 뻗어 있고 사법위원회에 대응하는 대상은 화요일에 시작한다. 두 대상은 화요일 이후의 시간적 부분을 공유하기만 하면 된다.

(퍼즐 1)·(퍼즐 2)는 이 대응을 허용하지 않는다. 한 시점에 공점한다는 것은 그 시점의 시간적 부분을 공유한다는 뜻이고, 시점에 상대화된 속성은 그 공유된 부분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시점 안에서 갈리는 술어**라야 반례가 된다.

낮익은 형식: 상속된 퍼즐

같은 형식이 일상적 대상의 존재론에 이미 있다.

찰흙과 조각상의 퍼즐

월요일에 산 찰흙 덩어리를 화요일에 이순신상으로 빚었다. 덩어리를 이루던 분자가 그대로 이순신상을 이룬다.

(덩어리 1) 이순신상은 월요일에 존재하지 않았다.

(덩어리 2) 덩어리는 월요일에 존재했다.

(결론) 이순신상은 덩어리와 동일하지 않다.

이 문헌은 존재 시점 차이형을 쓴다. 앞서 본 이유로 오늘의 공점 논증은 시점 내 술어 분기형을 쓴다.

이것은 본래 **물질적 이룸**(material constitution)의 퍼즐이다. 사회적 집단을 물질적 대상으로 환원하는 순간, 이 문제를 그대로 상속한다.

차례

- 1 공점의 문제
- 2 표적: 환원적 물질주의
- 3 의미론적 전환 전략
- 4 화용론적 해소 전략과 그 실패
- 5 결론

환원적 물질주의와 그 동기

환원적 물질주의

사회적 집단은 그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구체적 물질적 대상이다.

- **존재론적 검약성** — 집단을 설명하려고 별도 범주(sui generis)의 존재자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 **이론적 연속성** — 물질적 대상에 관해 발전된 형이상학, 특히 부분전체론(mereology)을 그대로 쓸 수 있다.

미리 밝혀 두는 결론

환원적 물질주의가 거짓이라는 것이 아니다. 결론은 **딜레마**다.

판본 1: 융합주의

집단은 구성원들의 부분전체론적 융합이다. (Quinton 1976; Copp 1984; Hawley 2017)

융합주의의 세 논제

- (융합 동일성) 집단은 그 구성원들의 융합이다.
- (단일 지칭) 일상 언어에서 집단 용어는 단칭 용어이다.
- (융합 외연성) 동일한 진부분들을 갖는 구성된 대상들은 동일하다.

구성의 유일성에 따라 융합은 그 부분들을 통해서만 식별된다. 집단이 같다거나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곧 부분들에 차이가 없거나 있다는 말이다.

판본 2: 복수주의

집단은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곧 그 구성원들, 즉 복수(plurality)이다. (Horden & López de Sa 2021)

복수주의의 세 논제

- (복수 동일성) 집단은 그 구성원들의 복수이다.
- (복수 지칭) 집단 용어는 위장된 복수(disguised plurals)이다.
- (복수 외연성) 모든 같은 대상을 진 포함하는 복수들은 동일하다.

근거로 드는 언어 현상: '저 검은 법복을 입은 아홉 사람은 대법원이다'가 영어에서는 복수 일치와 함께 자연스럽다. 복수 우선(plural override)과 그 자체로 복수인 표현(pluralia tantum)도 있다.

'Those nine people in the black robes *are* the Supreme Court.' / 'Barcelona *win* again.' / 'trousers', 'scissors'

두 판본의 공통 커미트먼트

외연적 동일성 조건

같은 구성원이면 같은 집단, 다른 구성원이면 다른 집단.

공점과 유연성의 퍼즐은 융합이나 복수냐 하는 장치에서가 아니라 바로 이 외연성 커미트먼트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두 이론의 운명은 이 퍼즐 앞에서 갈라지지 않는다.

- **공점의 문제** — 같은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집단일 수 있음을 설명하라.
- **유연성의 문제** — 다른 구성원들이 같은 집단일 수 있음을 설명하라.

동전의 양면이다. 다만 두 문제가 요구하는 **대가**가 다르다. 유연성에서 상대역 의미론과 시간적 부분 이론은 일상적 대상의 존재론에 이미 확립된 장치를 빌려 쓰는 것이다. 공점에서 같은 장치를 쓰려면 이름마다 다른 유사성 관계가 현저해진다고 상정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없다. 오늘은 **공점**에 집중한다.

세 갈래 길

(가) 외연성을 포기한다

비외연적 부분전체론으로 간다. 그러나 이 길은 일반적으로 구조주의로 수렴하고, 물질적 대상 외에 구조라는 항목을 인정하는 순간 그 이론은 성공하더라도 더 이상 **환원적 물질주의가 아니다**.

(나) 외연성을 지키고 언어로 해명한다

동외연적 집단들은 실제로 동일하며, 라이프니츠 법칙 논증에는 언어적으로 다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 집단 이름이 애초에 단칭 지칭 용어가 아니라고 본다 (Ludwig 2017)

단칭 집단 행위 문장을 양화 구문으로 읽으면 지칭의 대체 가능성을 적용할 자리가 없다. 공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오늘 검토하는 것은 (나)다 — **의미론적 전환**과 **화용론적 해소**.

셋째 길이 치르는 값

(Ludwig 2017, §11.3 — 구성원이 같은 두 클럽)

러드워의 답: 클럽을 세는 것은 **점유된 역할 유형**을 세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언어적 요령이 아니다

구성적 규칙 · 지위 기능 · 집합적 수용을 다루는 **사회존재론 다섯 장**을 지불하고서야 얻는 결과다. 개별화 부담은 성원 사실 바깥의 **역할 유형**이 떠맡는다.

도착지는 리치의 구조주의와 실질적으로 같다. 내 논제의 반례가 아니라, **부담을 실제로 갚으려면 무엇이 드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다.

차단 전략의 지도

(Magidor 2011)

라이프니츠 법칙 논증을 언어적으로 차단하는 길은 셋으로 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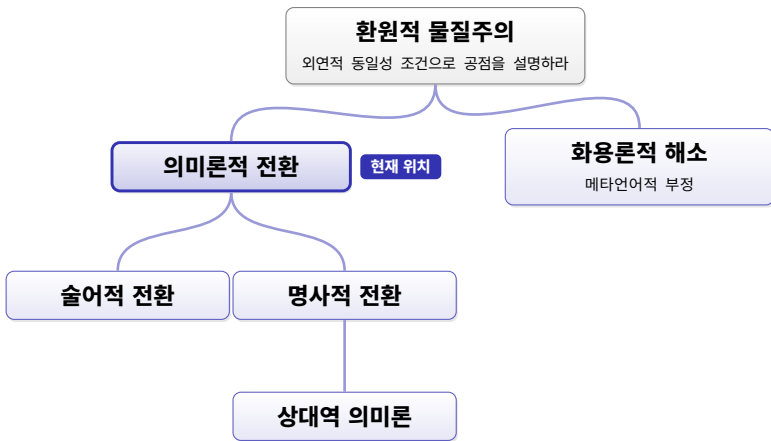
- **법칙을 부정** — 게이치식 상대적 동일성. 동일성 개념 자체를 바꾸므로 환원적 물질주의자가 치를 수 없는 대가다
- **적용을 부정** — 불투명성, 그리고 사보(2003)의 통사 구조 부인. 후자는 비단조적 술어에서만 돌고, 존재 증명은 양화사 영역 제한에 기댄다
- **전제를 부정** — 화용론적 해소(5절), 신러셀식 오도, 범주 오류

주의: 뒤의 두 판본은 **부정을 경유하지 않으므로** 5절에서 쓸 혼의 진단이 물지 않는다. 이 발표는 그것들을 직접 다루지 않으며, 그만큼 결론의 사정거리는 제한된다.

차례

- 1 공점의 문제
- 2 표적: 환원적 물질주의
- 3 의미론적 전환 전략
- 4 화용론적 해소 전략과 그 실패
- 5 결론

전략 지도



배경 개념: 역할과 점유자

- **역할** — 사회에서의 지위, 자리. 대한민국 대통령, 런던 시장, 미국 대법원.
- **점유자**(occupant) — 특정 시간에 실제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구체적 물질적 대상.

하나의 역할을 여러 점유자가 다른 시간에 맡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다만 직접 지칭으로 읽으면 곧바로 실패한다

(3*) 대법원의 역할은 헌법을 해석할 권한을 가진다.

추상적 엔터티는 판결하고 해석하는 행위자가 될 수 없다. 추상체가 권한을 갖고 행위한다고 말해야 하는 이론은 더 이상 환원적 물질주의가 아니다. 전략은 두 방향으로 세련화된다 — **술어**를 바꾸거나, **명사**를 바꾸거나.

술어적 전환

(Fine 2003, pp. 208–211)

일부 술어는 측면-상대적(respect-relative)이다.

측면-상대적 술어

‘교수직에 지원한 그 사람은 자격이 있지만, 청소부직에 지원한 그 사람은 자격이 없다.’ — 동일인에 대해 참되게 말할 수 있다. (Magidor 2011, p. 186)

주어항이 호출하는 측면에 술어가 “조정된다”.

(1p) 대법원은 **대법원-으로서**-회기-중이다. — 참

(2p) 사법위원회는 **사법위원회-로서**-회기-중이다. — 거짓

같은 융합이 지금 대법원-으로서 회기중일 뿐이므로, 동일성을 부정하지 않고 (1)과 (2)의 진릿값 차이가 설명된다.

술어적 전환의 문제

① 설명하지 못하는 문장이 있다 (Uzquiano 2004, p. 143)

(11) 사법위원회는 대법원으로서 회기중이다.

사법위원회가 대법원과 동일하다 해도 이 문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데 '대법원으로서 회기중이다'는 측면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술어가 아니라 그 자체로 특정 측면만을 지시하는 **측면-절대적** 술어에 가깝다.

② 가장 정교한 판본도 조건부로만 작동한다 (King 2006)

킹은 파인의 술어들이 **등급 형용사**(‘크다’, ‘비싸다’)라고 응답한다. 맥락이 기준을 공급하므로 술어도 조합 규칙도 늘지 않는다. 다만 이 방어는 문제의 술어가 등급 형용사일 때에만 작동한다.

우리 술어는 그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 — ***매우 회기중이다, *더 회기중이다, *위원회치고는 회기중이다**. 킹 자신이 비등급 술어 앞의 잔여를 인정한다. (p. 1057)

두 갈래 상대성

(Fine 2006, p. 197 — 킹에 대한 재응답)

반론이 하나 예상된다. 등급 형용사는 원래 ‘~로서’ 구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농구 선수로서 그는 크다’는 어색하지만 ‘농구 선수치고는 그는 크다’는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11)의 어색함도 반증이 아니게 된다.

그러나 상대성에는 두 종류가 있다

종적 기준 어떤 잣대로 판정하는가 — ‘~치고는’

종적 지위 어떤 종의 대상이 문제인가 — ‘~로서’

술어적 전환이 필요로 하는 것은 **지위**인데, 등급 형용사가 주는 것은 기준뿐이다. (11)의 ‘대법원으로서’는 지위를 지시하므로 검사는 유지된다.

복수주의가 더 큰 대가를 치른다

(Fine 2003, p. 229 — 복수 논변)

술어적 전환을 끝까지 밀면 **지칭과 성원 관계까지** 종에 상대적인 것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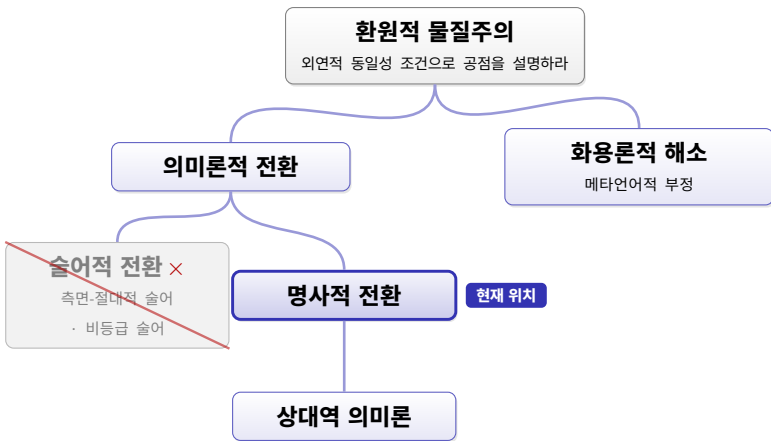
복수주의에 특히 뼈아프다

복수주의가 내세운 장점 가운데 하나가 성원 조건의 간명함이었다.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임'이 종-상대적 관계가 되면 그 장점은 사라진다.

킹은 이 논변에 응답하지 않고 넘어간다. (King 2006, p. 1056, 각주 51)

따라서 2장에서 두 판본의 운명이 갈라지지 않는다고 한 것은 **여기서 단서를 달아야 한다.**

전략 지도: 술어적 전환 이후



명사적 전환

(Horden & López de Sa 2021, pp. 10250–10251; ‘명사적 전환’은 Richardson 2022의 명명)

동외연적이면서 구분되는 집단이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은 두 사용의 혼동이다.

- **개별적 사용** — 구성원들의 복수를 지칭한다. 대부분의 담화.
- **추상적 사용** — 집단이 점유한 **역할**을 지칭한다. 공점·유연성 직관을 포함하는 문제적 문장.

모형이 되는 직위 사례

- (i) 대법원장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ii) 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iii) 둘은 동일하지 않다.
— 여기서 두 표현은 점유자가 아니라 역할을 지칭한다.

집단 이름은 고정 지시어가 아니라 유연한 역할 기술구가 된다. 그래서 유연성 문장도 역할 점유의 변동에 관한 기술로 읽힌다.

명사적 전환의 문제

① 전환 기준의 부재 (Richardson 2022, p. 473)

한 담화 안에서 '대법원'은 권한 귀속 문장에서는 역할을, 회합 문장에서는 개별 집단을, 대용어로 받을 때는 다시 사람들을 지칭한다. 어떤 기준에서 두 사용이 갈리는지가 제시되지 않는다.

② 조합성

'블랙핑크는 해왕성에서 파란색 집을 짓는다' — 처음 듣는 문장도 우리는 이해한다. 그런데 이 설명에서는 주어의 사용 방식을 알려면 블랙핑크가 실제로 어떤 권한을 갖는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 일반 이론이 없다면 이는 의미론적 일반화가 아니라 **반례 처리용 사후(ad hoc) 해석 조정**이다.

같은 문제의 재귀: 상대역 의미론

(Wilhelm 2022, pp. 2146–2150)

월헬름은 형이상학과 자연언어 의미론을 분리한다. 대법원과 사법위원회는 엄밀히 동일한 복수이지만, 맥락이 두 이름에 결부시키는 유사성 관계가 달라지면 ‘대법원과 사법위원회는 구분된다’가 그 맥락에서 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이름이 어떤 유사성 관계를 현저하게 만드는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상대역 관계가 진리조건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일반 기준이 없는 한, 명사적 전환에 제기된 **임의성 문제가 유사성 관계의 선택 문제로 자리만 옮겨** 되돌아온다.

덧붙여, 상대역 장치의 도입이 복수주의의 검약성 동기와 긴장한다는 2장의 지적도 그대로 적용된다.

집단 이름의 기술구 독해: 크립키식 비판

크립키(1980)의 반기술주의 논증을 집단 이름에 적용한 것은 이정규(Lee 2026, 미출간)의 기여다.

역할 용어 전략은 집단 이름의 의미를 역할 기술과 연결한다는 점에서 기술주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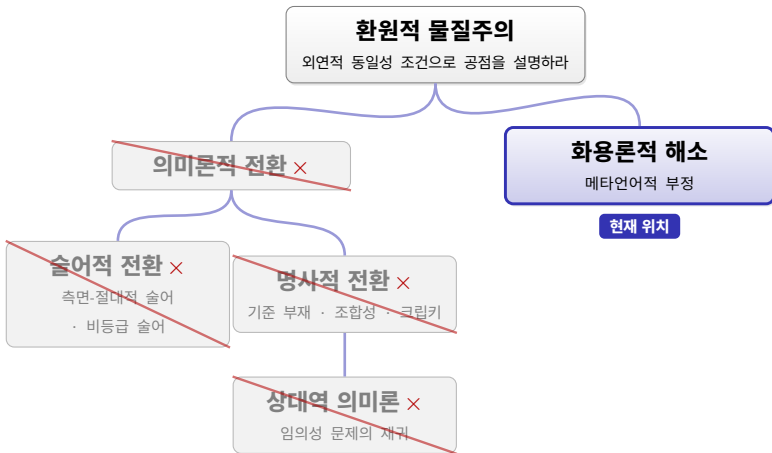
- **양상 논증** — ‘블랙핑크가 존재한다면 블랙핑크는 블랙핑크이다’는 필연적으로 참이지만, ‘블랙핑크는 코첼라의 헤드라이너인 그 케이팝 걸그룹이다’는 우연적으로만 참이다.
- **인식론적 논증** — 전자는 선험적으로 알 수 있고, 후자는 경험적 조사 없이는 알 수 없다.
- **무지와 오류의 논증** — 집단에 대해 잘못 알고 있어도 ‘블랙핑크’의 지시는 실패하지 않는다.

집단 이름의 적어도 일부는 **밀적 이름**으로 작동한다. 외연주의는 ‘대법원’ 같은 제도적·역할 중심적 사례를 집단 이름 전반에 과잉 일반화한다.

차례

- 1 공점의 문제
- 2 표적: 환원적 물질주의
- 3 의미론적 전환 전략
- 4 화용론적 해소 전략과 그 실패
- 5 결론

전략 지도: 남은 길



남은 길: 화용론적 해소

의미론적 전환이 막히면 외연주의자에게는 화용론이 남는다.

전략의 구도 (Horden & López de Sa 2021)

- ① '대법원은 사법위원회가 아니다'는 **문자적으로 거짓**이다.
- ② 그러나 그 대응 긍정문도 적절한 발화가 아니다.
- ③ 집단 명칭이 특정 역할·지위·규범적 자격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 ④ 따라서 그 부정문은 기술적 부정이 아니라 오도적 표현을 차단하는 **메타언어적 부정**이다.

진리조건은 외연주의가 지키고 직관은 화용론이 흡수한다. 성공한다면 라이프니츠 법칙 논증의 부정 전제들이 무력화된다.

메타언어적 부정의 개념

(Horn 1985; 1989)

- **기술적 부정** — 명제 수준의 진리함수적 연산. “명제 p 를 not- p 로 보내는 연산자”
- **메타언어적 부정** — 발화 수준의 이의제기 장치. “‘나는 그 발화에 이의를 제기한다’로 표현될 수 있는 연산자”이며, 여기서 대상은 “결정적으로 추상적 명제가 아니라 언어적 발화”이다. (1985, p. 136)

의미론적 애매성이 아니라 **화용론적 애매성**으로 제시된다.

이의제기의 근거는 다양하다

선제 실패 — ‘프랑스 왕은 대머리가 아니다. 프랑스에는 왕이 없다.’

등급 함축 — ‘몇몇 남성이 안티페미니스트인 것은 아니다. 모두가 그렇다.’

어감과 위상 — ‘나는 비서가 아니라 총무간사이다.’

혼의 진단 기준

- 1 **교정 구조** — ‘X가 아니라 Y’의 형태를 가지며, Y는 단순한 대립항이 아니라 X를 대체하는 더 적절한 표현이다.
- 2 **표적** — 명제의 참이 아니라 단언 가능성(assertability)이다.
- 3 **추론 규칙과 비대응** — 기술적 부정으로 읽힐 때에는 라이프니츠 법칙 논증의 전제가 될 수 있으나, 메타언어적으로 읽히는 순간 그 기능을 잃는다.
- 4 **극어와의 상호작용** — 부정 맥락에서만 허용되는 표현의 허용 양식이 달라진다.

‘John didn’t manage to solve SOME problems—they were quite easy for him to do.’
(p. 132)

덧붙여 전형적인 메타언어적 부정은 교정적 후속절, 억양적 강조, 대조적 포커스와 결합할 때 훨씬 자연스럽게 해석된다.

사회적 집단에서의 적용

(상원 결론의 부정) 대법원은 상원에 의해 조직된 위원회들 중 하나이지 않다.

대법원은 곧 사법위원회이고 그 대상은 상원에 의해 조직되었으므로, 이 문장은 외연주의자에게 **문자적으로 거짓**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참처럼, 적절한 발화처럼 받아들인다.

호든과 로페즈 데 사의 답

(상원 결론)을 주장하는 것은 대법원이 대법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상원에 의해 조직되었다는 부적절한 함의를 갖는다. 따라서 그 부정은 내용의 부정이 아니라 이의제기다 — “대법원을 ‘상원에 의해 조직된 위원회’라고 말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마라.”

같은 장치가 (덩어리 1)에도 적용되어 왔다. (Schnieder 2006; Almotahari 2014a; 2014b)

비판 ①: 진단 기준 미충족

전형적인 메타언어적 부정은 교정적 후속절, 억양적 강조, 대조적 포커스와 함께 나타난다.

- ‘대법원은 사법위원회가 아니다’, ‘대법원은 1789년에 창설되지 않았다’는 **평범한 서술문**으로 발화된다.
- 무엇이 어떤 점에서 이의제기의 대상인지도 특정되지 않는다.

문장이 오도적일 수 있다는 것과 그 문장이 메타언어적으로 부정되었다는 것은 다른 주장이다.

더 나아가

메타언어적 부정을 수행하려면 화자나 청자가 문자적 내용과 화용론적 결함을 어느 정도 구별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상 화자들은 ‘대법원은 사법위원회가 아니다’를 **문자적 참**으로 받아들인다. 이론에 익숙한 외연주의자의 언어 감각을 화자 일반에 투사할 수는 없다.

비판 ②: 기본 독해 아님

예상되는 재반론 (Almotahari 2014a, pp. 498–499; Horden & López de Sa 2021, p. 10248)

화자가 의식하지 못해도, 노골적 표지가 없어도 메타언어적 부정은 성립한다.

‘We shouldn’t make RESOLUTIONS. We should have GOALS.’

CNN 출연자는 결심과 목표 사이에 실질적 차이가 있다고 믿었지만 설명에 실패했다. 차이는 어감뿐이었다. 화자들은 두 부정을 늘 민감하게 구별하지 못한다.

응답 (Magidor 2011의 전략을 적용)

이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문제의 전제들이 메타언어적으로 읽힐 수도 있다는 가능성뿐이다. 그 독해가 실제 논증 맥락에서 기술적 독해를 대체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주장이다. **독해 가능성만으로는** 라이프니츠 법칙 논증 일반이 무너지지 않는다.

비판 ③: 과잉 증명

호든과 로페즈 데 사는 '대법원은 아홉 개의 서로 다른 성씨를 가진다'조차 해석적 노력을 기울이면 참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한다. (2021, p. 10249)

여권 사례

'블랙핑크의 구성원들은 자기 이름으로 된 여권을 가지고 있지만, 블랙핑크는 자기 이름으로 된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일상 화자에게 이 문장은 조금도 기이하지 않은 명백한 참이다. 그러나 이 전략의 채택자는 둘째 연언지가 문자적으로 거짓이며, 오히려 '블랙핑크는 자기 이름으로 된 여권을 가지고 있다' 쪽이 참으로 들리는 문장이라고 말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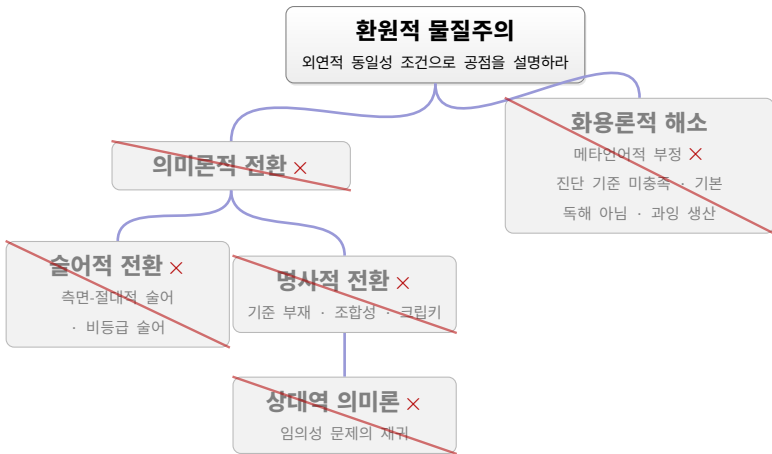
반증 차단 비용

불리한 문장 대부분이 이렇게 처리된다면 이 이론은 언어적 데이터 앞에서 결코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 그것은 강점이 아니라, **일상 언어 실천 전체를 오류로 만드는 비용**이다.

차례

- 1 공점의 문제
- 2 표적: 환원적 물질주의
- 3 의미론적 전환 전략
- 4 화용론적 해소 전략과 그 실패
- 5 결론

전략 지도: 결산



첫째 갈래: 외연주의를 지키면 — 모든 보조 전략이 실패한다.

둘째 갈래: 포기하면 — 검약성·연속성 동기를 잃는다.

딜레마

첫째 갈래 — 외연주의 의미론과 결합하는 한

공점 현상을 설명할 보조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략들은 각기 실패한다.

- 술어적 전환 — 측면-절대적 술어 앞에서 좌초, 비등급 술어에 적용 불가
- 명사적 전환 — 전환 기준 부재, 조합성 위반, 크립키식 논증
- 상대역 의미론 — 임의성 문제의 재귀
- 메타언어적 부정 — 진단 기준 미충족, 기본 독해 아님, 과잉 생산

둘째 갈래 — 그 결합을 포기하면

존재론적 검약성과 이론적 연속성이라는 자신의 핵심 동기를 상당 부분 포기하게 된다.

맺음말

환원적 물질주의가 존재론의 영역에서 틀렸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성공하려면 사회적 집단 이름이 어떻게 지칭하는지, 동일한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집단으로 취급되는 사회적 실천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해야 한다.

사회적 집단의 존재론은 집단 이름의 의미론과
분리된 채로 완성되지 않는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요 참고문헌 I

- Almotahari, M. (2014a). Metalinguistic negation and metaphysical affirmation. *Philosophical Studies*, 167(3), 497–517.
- Almotahari, M. (2014b). The identity of a material thing and its matter. *The Philosophical Quarterly*, 64(256), 387–406.
- Fine, K. (2003). The non-identity of a material thing and its matter. *Mind*, 112(446), 195–234.
- Hawley, K. (2017). Social mereology. *Journal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Association*, 3(4), 395–411.
- Horden, J., & López de Sa, D. (2021). Groups as pluralities. *Synthese*, 198(11), 10237–10271.
- Horn, L. R. (1985). Metalinguistic negation and pragmatic ambiguity. *Language*, 61(1), 121–174.
- Horn, L. R. (1989). *A Natural History of Neg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ripke, S. A. (1980). *Naming and Necessity*. Harvard University Press.
- Lee, J. (2026). 미출간 원고.
- Magidor, O. (2011). Arguments by Leibniz's law in metaphysics. *Philosophy Compass*, 6(3), 180–195.
- Richardson, K. (2022). Social groups are concrete material particulars.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52(4), 468–483.
- Uzquiano, G. (2004). The Supreme Court and the Supreme Court Justices: A metaphysical puzzle. *Noûs*, 38(1), 135–153.
- Wilhelm, I. (2022). Pluralities, counterparts, and groups. *Philosophical Studies*, 179, 2133–2153.
- 우인진 (2026). 「사회적 집단의 지칭과 공점의 문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